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튼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16.03.02

3. 변경사유

- Class C-p 수익증권의 추가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table>
<tr><th colspan="4">현 행</th><th colspan="4">변 경</th></tr>
<tr><td colspan="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td><td colspan="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td></tr>
<tr><td>구분</td><td>투자금액 및 투자자격</td><td>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제40조참조)</td><td>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제41호참조)</td><td>구분</td><td>투자금액 및 투자자격</td><td>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제40조참조)</td><td>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제41호참조)</td></tr>
<tr><td colspan="4">1.~6.(생략)</td><td colspan="4">1.~6.(현행과 같음)</td></tr>
<tr><td>7. Class S 수익증권</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td><td>있음 (제40-1조 참조)</td><td>있음</td><td>7. Class C-p 수익증권</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td><td>해당사항없음</td><td>없음</td></tr>
<tr><td></td><td></td><td></td><td></td><td>8. Class S 수익증권</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td><td>있음 (제40-1조 참조)</td><td>있음</td></tr>
</table>

	전용으로서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3. Class C 수익증권
4. Class C-e 수익증권
5. Class C-w 수익증권
6. Class C-f 수익증권
7. Class S 수익증권

②~⑤(생략)

제39조(보수)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6.(생략)

7.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2.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3. Class C 수익증권
4. Class C-e 수익증권
5. Class C-w 수익증권
6. Class C-f 수익증권
7. Class C-p 수익증권
8. Class S 수익증권

②~⑤(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6.(현행과 같음)

7. Class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2.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8.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2.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제40조(선취판매수수료) 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선취판매수수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p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0-1조(후취판매수수료) ①~③(생략)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0-1조(후취판매수수료)** ①~③(현행과 같음)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p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생략)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자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자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④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lass C-p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table>
<tr><th>항 목</th><th>정 정 전</th><th>정 정 후</th></tr>
<tr><td>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td><td>-</td><td>
<table>
<tr><td>(종류) 클래스</td><td>Class C-p</td></tr>
<tr><td>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d><td>BB299</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td><td>-</td><td>
<table>
<tr><td>(종류) 클래스</td><td>Class C-p</td></tr>
<tr><td>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d><td>BB299</td></tr>
</table>
</td></tr>
<tr><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d><td>-</td><td>
<table>
<tr><th rowspan="2">종류별</th><th rowspan="2">최초설정일</th><th rowspan="2">가입자격</th><th colspan="2">수수료</th><th colspan="4">보수</th></tr>
<tr><th>판매</th><th>환매</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일반사무관리회사</th></tr>
<tr><td>Class C-p</td><td>-</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td><td>없음</td><td>없음</td><td>연 0.50%</td><td>연 0.20%</td><td>연 0.03%</td><td>연 0.015%</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d><td>-</td><td><table>
<tr><th>구분</th><th>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th></tr>
<tr><td>7. Class C-p
수익증권</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td></tr>
</table></td></tr>
<tr><td>나. 환매
(5) 환매수수료</td><td><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
(연간,%)</th></tr>
<tr><th>종류</th><th>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th></tr>
<tr><td rowspan="2">환매수수료</td><td>30 일 미만</td><td>이익금의 70%</td></tr>
<tr><td>30 일이상 90 일 미만</td><td>이익금의 30%</td></tr>
</table></td><td><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지급비율
(연간,%)</th></tr>
<tr><td colspan="2">종류</td><td>Class A, A-e, C, C-e, C-w, C-f, S</td></tr>
<tr><td rowspan="2">환매수수료</td><td>30 일 미만</td><td>이익금의 70%</td></tr>
<tr><td>30 일이상 90 일 미만</td><td>이익금의 30%</td></tr>
</table>
- 환매수수료의 면제 : “수익증권저축약관” (Class C-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td></tr>
<tr><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d><td>-</td><td><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수수료율</th></tr>
<tr><th>Class C-p</th></tr>
<tr><td>선취판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후취판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환매수수료</td><td>없음</td></tr>
</table></td></tr>
<tr><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td><td><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
(연간, %)</th></tr>
<tr><th>Class C-p</th></tr>
<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연 0.20%</td></tr>
<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0.50%</td></tr>
<tr><td>신탁업자 보수</td><td>연 0.03%</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5%</td></tr>
<tr><td>기타비용</td><td>-</td></tr>
<tr><td>총 보수·비용</td><td>연 0.745%</td></tr>
<tr><td>증권 거래비용</td><td>-</td></tr>
</table></td></tr>
<tr><td><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td><td>-</td><td><table>
<tr><th>구분</th><th>1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Class</td><td>76</td><td>241</td><td>422</td><td>960</td></tr>
</table></td></tr>
</table>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C-p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변경후 1)**

변경후 1)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	주요내용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2015.1.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